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철학과 내규

2018년 1월 29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단국대학교 교육 이념과 교육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학원의 학칙 및 시행 세칙에 따라 대학원 철학과의 합리적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와 효력)

본 내규는 일반대학원 철학과 석사과정에 적용되며,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한다.

제2장 입학관리

제3조 (우수학생의 유치)

대학원 철학과 소속 교수들은 대학원 철학과 석사 과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 학생의 모집에 적극 노력한다.

제3장 전공 구분 및 교육과정

제4조 (전공의 구분 및 선택)

- 대학원의 세부전공은 융합철학, 한국문화철학으로 한다.
- 대학원생의 세부전공은 입학 시 본인이 선택한 전공으로 한다.
- 대학원생이 입학 후 자신의 전공을 바꾸고자 할 경우 입학 첫 학기에 지도교수 변경 신청을 통해 전공을 교체할 수 있다.
- 전공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 기 희망한 전공의 지도교수와 교체할 전공의 지도교수 모두에게 승인을 얻어 주임교수의 최종 결재를 받아야 한다.
- 대학원생은 자신의 세부 전공에서 규정된 전공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5조 (학부 보충 과목)

- 삭제 -

제4장 논문지도

제6조 (지도교수의 선정)

- 대학원 철학과 교수회의에서는 석사과정 학생에게 2학기 시작 이전까지는 반드시 논문 지도 교수 배정을 한다.
- 지도교수의 유교(퇴임 등)로 인해 석사과정 학생에게 지도교수가 없는 경우에는 교수회의를 거쳐 논문 지도교수를 다시 배정하도록 한다.

제5장 자격시험

제7조 (종합학력시험 면제기준)

- 대학원 철학과 석사과정 학생은 종합학력시험을 3학기를 마치기 이전에 응시하여야 하며, 별도의 면제기준은 없다. (2020년 3월부터 적용)

제8조 (종합학력시험 출제와 채점)

- 석사과정 학생의 종합학력시험 응시과목은 공통과목 1과목과 세부 전공과목 1과목으로 한다.
- 종합시험의 범위는 선정, 고시되는 각 분야의 필독도서에 한한다.
- 종합시험 불합격 시 횟수에 관계없이 해당과목을 다음 학기에 재응시 할 수 있다.
- 구두시험은 과목별로 학과 전임교원 2인이 참여하여 공동 출제하고 공동 평가하되, 세부전공별 특성을 감안하여 2인 중 1인이 2/3 이상을 출제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 (외국어시험 과목)

- 대학원 철학과 석사과정 학생의 외국어 자격시험 면제에 관한 사항은 본교 대학원의 학칙 및 시행세칙을 따른다.
- 다만 학과의 학문 특성을 감안하여 각 세부전공별로 아래와 같은 외국어 공인어학시험 성적으로도 외국어 자격시험 면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①융합철학전공: 독일어 ZD B1 이상, 프랑스어 DELF B1 이상

②한국문화철학전공: 중국어 HSK 5급 이상, 일본어 JLPT N1, N2, JPT 600점 이상

- 또 각 세부전공별로 아래와 같은 국가의 대학에서 대학원 혹은 대학과정을 수학했거나 어학연수를 하여 연수증서를 제출한 자 역시 외국어 자격시험이 면제된다.

①해외 수학 및 연수 인정 국가: 융합철학전공 –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한국문화철학전공 – 중국, 대만, 일본

③ 수학기간과 연수증서 유효기간은 본교 학칙의 세부시행규칙을 따른다.

제6장 학위과정

제10조 (석사학위 과정 선택) 본교 대학원 철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해, 심사, 통과하는 것 한 가지만을 취한다.

제7장 학위논문 심사 및 제출

제11조 (연구계획서 발표 및 승인)

1. 학위논문을 작성하고자 하는 자는 학과에서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연구계획서를 공개 발표하여야 한다.
2. 연구계획서를 공개발표가 이루어지기 7일전까지 학과 사무실에 제출한다.
3. 발표한 연구 계획서에 대하여 학과 교수 2인 이상과 지도교수의 심사 하에 70점 이상은 합격, 70점 미만은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4. 연구계획서 발표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차기에 수정 발표를 할 수 있다.

제12조 (학위논문의 심사위원회 구성)

1. 지도교수는 석사과정 학생의 학위논문 심사를 위한 논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주임교수에게 제출한다.
2. 논문 심사는 대학원에서 정한 기간에 심사위원의 전원 참석 하에 진행한다.
3. 석사학위 논문은 내부 교수 2인과 외부 교수 1인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한다.
4. 외부 심사위원이 부득이하여 대면 심사를 할 수 없을 경우 서면으로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제13조 (학위논문의 심사)

1. 석사과정 학생의 논문 심사는 자격시험→계획서발표→논문작성→예비심사→본심의 차례로 진행된다.
2. 예비 심사는 교내 전임교수들이 참석하여 협의, 판정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본심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제8장 학과 운영위원회

제18조 (의사결정 방식)

1. 대학원 철학과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교수회의는 매달 1회 개최한다.

2. 학과 전임교원들은 교수회의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나, 교수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교원의 경우 자신의 권한을 위임한다.
3. 학과 전임교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기 교수회의 이외의 부정기 학과 교수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4. 교수회의는 전체 교수 1/2 이상의 참석(위임 포함)과 참석 교수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1. 본 내규 내 적용되지 않거나 새로운 사안이 있을 경우 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이를 내규에 추가한다.
2. (시행일) 본 내규는 2018년도 3월 2일부터 적용한다.